

방재와 보험은 자전거의 두바퀴



朴 恩 會
(成大 교수·韓國保險學會長)

위험이란 원자재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위험이 없으면 방재도 필요 없을 것이다. 방재와 보험은 위험이란 원자재를 가공하여 안전이란 제품을 창출하는 공정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약 1만년전에 농경사회가 형성될 때까지 인류는 먹이를 찾아 떠돌아다녔다고 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지진, 노아의 홍수, 비스비우스산의 분출 등 천재를 당하면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체념하고 신에게 구원을 빌었다.

인간의 지혜가 발달함에 따라 동굴을 찾아 피신하기도 하고,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돌을 던져 대항하기도 했다. 이것이 방재의 원시적인 형태였다.

14세기경 지중해를 중심으로 국제무역이 활발히 전개되자 모험대차라는 형식으로 위험을 금융적으로 처리하는 지혜를 발전시키게 되었고, 이 제도가 더욱 진화하여 근대보험에 성립된 것이다.

위험을 처리하는 슬기는 신앙에서 방재로, 방재에서 금융으로, 금융에서 보험으로 성장했고, 1960년대 이후 위험 관리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성숙하여 경영학의 한 분야로써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방재와 보험의 원자재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무엇인가? 많은 학설이 있지만 결론은 「손해의 가능성」(Chance of loss, Possibility of loss, Exposure to loss) 등이다.¹⁾

손해는 손실, 상실, 멸실, 감소, 파손 등으로 표현되는 모든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이다.

손해는 인적손실과 경제적손실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가 된다.

〈인적 손실〉

- ① 건강의 상실(상해·질병·장해 등)
- ② 노동기회의 상실(실업·정년퇴직 등)
- ③ 정신적평화의 상실(피해자의 고통)
- ④ 생명의 상실(사망)

〈경제적 손실〉

- ⑤ 수익의 감소(사고로 인한 휴업증)
- ⑥ 비용의 증가(손해방지·구상 등)
- ⑦ 부채의 증가(배상책임의 발생)
- ⑧ 자산의 감소(사고로 멸실)

손해(Loss)의 원인은 사고(Peril)이다. 화재, 자동차사고, 해난, 계약의 불이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을 장애(Hazard)²⁾라고 한다. 장애에는 자연적·사회적·인위적 장애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인위적 장애는 다시 도덕적·기강적(또는 방관적), 기술적 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같이 손해는 장애로 인한 사고의 결과로 입는 가치의 감소이며,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위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위험의 처리 방법

위험의 처리방법은 「손해전의 통제」와 「손해후의 복구」로 구분할 수 있다. 손해전의 통제(Loss Control)가 방재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장애를 제거(Elimination)하는 것이다. 회피(Avoidance)와 책임전가(Transfer of liability)³⁾가 이에 해당한다. 회피는 가장 소극적인 방재로 사고의 원인 자체를 피해버리는 것이다. 물에 가지 않으면 익사하지 않을 것이며, 불을 쓰지 않으면 화재가 나지 않을 것이다. 보험회사가 위험물건의 인수를 거절하면 회피가 된다.

한편 책임전가는 위험을 인수하되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주도급업자가 인수한 계약을 하도급업자에게 하청할 경우, 또는 사무소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사고를 예방(Prevention)하는 것이다. 장애를 제거하지 못하면 이번에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건물을 잘 관리하고, 화기를 단속하며, 기술을 숙련시키고, 주의력을 집중시키면 대부분의 사고는 미리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화재나 자동차사고의 70~80%는 사람의 부주의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진이나 폭풍과 같은 자연장애, 전쟁이나 소요와 같은 사회장애, 또는 설계상의 결함과 같은 기술장애를 경영적인 방책으로 예방할 길이 없으므로 다음 방법으로 넘

어가야 한다.

셋째는 손해를 경감(Minimizing)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산과 방지의 두 가지가 있다. 분산(Separation)에는 시설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으며, 또한 시설내에 방화선이나 방화벽을 설치하여 손해의 확산을 막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방재의 마지막 수단이 손해를 방지(Reduction)하는 것이다. 사고발생 후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고 전에 미리 해두어야 할 조치와 사고 후에 취할 조치가 있다.

화재경보기, 소화기, 스프링클러, 비상계단과 같은 시설이나 방화훈련은 사고전에 필요한 것이고, 소화, 대피, 구상권의 확보 등은 사고 후에 취할 조치 등이다.

이상과 같은 방재활동이 끝나면 손해의 복구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전문서에서는 위험재무(Risk Financing)이란 용어를 쓰고 있으나 어감상의 위험재무에는 방재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필자는 「손해의 복구」(Loss recovery)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본다. 손해의 복구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보유(Retention)이다. 손해를 자기비용으로 복구하는 것이므로 자가보험(Self-insurance)이라고도 한다. 보유를 다시 의도적인 보유(Intentional retention)와 본의 아닌 보유(Involuntary reten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의도적인 보유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에 붙이지 않은 경우이다. 당기손실로 처리하는 방법, 이연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 기금으로 충당하는 방법, 차입으로 처리하는 방법, 캐ptive(Captive)회사⁴⁾를 설립하여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의아닌 보유는 보험에 붙었으나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경우(Insured but not paid)에 할 수 없이 스스로 손해를 복구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보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면책조항이 있게 마련이다.⁵⁾

둘째는 분할(Sharing)이다. 가계나 기업이 위험의 일부

1) 危險의 본질에 관해서는 졸고「危險의 본질에 관한 研究」, 보험학회지 제22집(1983. 9)을 참조바람.

2) 英文의 Hazard를 危險(예: 道德的 危險)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나 Risk와 區分하기 위해서 障碍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3) 많은 문헌에서 轉嫁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損害의 복구방법의 하나인 轉嫁와 구별하기 위해서 필자는 책임전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캐ptive會社도 자기위험만을 인수하는 순수캐ptive(Pure Captive)만이 여기에 해당하며, 他社의 위험도 인수하는 혼합캐ptive(Mixed Captive)나 인수한 위험을 타사에 재보험하는 경우는 分割에 해당한다.

5) 保險의 한계에 관해서는 졸고「보험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 보험조사월보(1982. 10) pp. 5~17를 참조바람.

를 공제(Deductible)로 인수하고 초과분만을 보험으로 전가한다면 위험의 분할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위험을 서로 분할하면 공동보험(Co-insurance)이 되며, 인수한 위험의 일부만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하면 이론상 분할이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는 손해의 전가(Transfer of loss)이다. 위험의 처리 방법 중에서도 최종적이며 또한 가장 비중이 큰 것인데, 여기에는 보험과 비보험전가(Non-insurance transfer)가 있다. 비보험전가에는 무해계약(Hold-harmless agreement), 보증, 헤징(Hedging)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전가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역시 보험이다. 보험은 가계나 기업이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에 완전히 전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방재와 보험의 상호보완성

방재와 보험이 위험을 처리하는 기법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심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방재가 사고의 예방과 손해의 경감이라면 보험은 손해의 복구수단이다. 이제 두 가지 기능의 공통점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방재와 보험은 위협이라는 원자재를 처리해서 안전이라는 제품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과 소재와 제품이 모두 공통된 것이다.

둘째, 방재와 보험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라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다른 상품은 필요할 때 사면되지만 방재와 보험은 필요하지 않을 때 사야만 한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는 방재시설을 해도 소용이 없고, 또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회사가 받아주지 않는다. 손해는 있었으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위험)은 없어졌기 때문이다.

셋째, 방재는 손해전(Pre-loss)에 필요한 조치이고, 보험은 손해후(Post-loss)에 필요한 조치이다(사고전에 가입해야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필요로 하는 시기가 표리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방재가 끝나는 시점에 보험이 등장하는 셈이다.

넷째, 비용에 있어서 서로 보완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Baglini는 그의 저서 「국제기업의 위험관리」⁶⁾에서 위험의

원가(Cost of risk)를 산출하는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방재비용(Loss Control Cost)
- + ② 부보된 손해(Insured Loss)
- + ③ 부보되지 않은 손해(Uninsured Loss)
- + ④ 부보되었으나 보상되지 않은 손해(Insured But Not Paid Loss)
- + ⑤ 위험관리비용(RM Expenses)
- ⑥ 보험자로부터의 회수액(Recovery from Insurers)
- ⑦ 소잔물처분액(Salvage)
- = ⑧ 위험의 원가

위험관리의 목적은 위험의 원가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방재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 사고가 예방되고 손해가 경감되므로 보험료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 반면 방재를 소홀히 하면 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총원가가 절감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보험요율의 산정원칙에 예방성(Inducement of Loss Protection Activities)이라는 것 있다. 즉 보험료는 방재를 유도하도록 산출되어야 하다는 것이다. 방재시설이나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제도,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의 보상 등이 그러한 취지에서 생긴 것이다.

다섯째, 방재는 보험의 수요를 창조한다. 방재가 발달하면 보험의 원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그렇다고 보험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미국에서 실증되었다. 1930년대부터 미국에는 컨슈머리즘이 대두되어 미국경영자협회는 보험부를 설치하여 방재와 보험에 관한 세미나를 자주 개최했다. 그후 50년대에 발족한 위험 및 보험관리협회⁷⁾에서는 소비자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여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방재와 보험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같이 발전해야 할 공동운명체인 것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앞으로도 방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

6) Norman A. Baglini, Risk Management in International Corporations, Risk Studies Foundation, 1976, 9. 3.

7) 최초에는 National Insurance Buyers Association이었으나 후에 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ciety로 개칭하였으며 현재 약 3천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